

안녕하세요 김동이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시험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서울시 문제는 쉬운 것은 확실히 쉽게, 지엽적인 것은 너무나도 지엽적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네요..이런식이라면 내년 법률 정리 프린트는 100페이지를 넘길 수도...^^;;

그리고, 새로운 계산문제(8번)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8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임업직 수험생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

* 질문은 학원사이트 강사소개-질문게시판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면접자료는 다시 정리중이라 정리가 끝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서울시 9급 임업경영 (A형)

1. 우리나라 국유림의 기능별 산림구분에 있어서 산림의 기능과 그에 따른 관리대상산림이 잘 못 짝지어진 것은? 2

- ① 목재생산기능 - 요존국유림
- ② 산지재해방지기능 - 비사방비보안림
- ③ 생활환경보전기능 - 풍치보안림
- ④ 자연환경보전기능 - 사찰림

-> 답스팟 p.170

*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산림법에 의한 풍치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의 안의 산림, 그 외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2. 표고버섯자목, 펄프재 등에 적합한 용재생산을 목표로 산림을 경영할 때 적용할 벌기령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 ①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 ② 재적수확 최대의 벌기령
- ③ 공예적 벌기령 ④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 탑스팟 p.95

* 공예적 벌기령

임목이 일정한 용도에 적합한 크기의 용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벌기령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용도, 예를 들면 표고버섯자목·펄프재 및 신탄재생산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형상이나 규격에 알맞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다.

3. 임분밀도의 척도 중 흉고단면적과 평방평균직경을 병합시킨 것은? 1

- ① 상대밀도
- ② 입목도
- ③ 임분밀도지수
- ④ 상대공간지수

-> 탑스팟 p.111

* 상대밀도(relative density ; RD)

: 흉고단면적과 평방평균직경을 병합시킨 것이다.

이 임분밀도척도는 미국 북서태평양지역의 미송임지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4. 수간석해 시 조사목의 벌채와 원판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① 조사목은 표준목 혹은 대상임분의 평균직경을 가진 수간이 곧은 나무를 선정한다.
- ② 흉고를 1.2m로 했을 경우, 지상 0.2m되는 곳을 벌채점으로 한다.
- ③ 원판두께는 3~5cm가 바람직하다.
- ④ 수고가 10.5m일 때 소단부의 길이는 1.3m이다.

-> 탑스팟 p.286

원판 채취 : 대상 임분에서 평균직경을 가지고 피압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자란 표준목을 선정해서 벌채한다. 벌채점은 흉고위치가 1.2m일 경우 지상 0.2m 되는 곳을 선정하여 두께 3~5cm 정도로 수간에 직각이 되도록 벌채점 위를 벤다. 원판의 채취는 처음에는 벌채점으로부터 1m로 하고, 그 이상은 2m 마다 채취하며 제일 마지막의 것은 1m간격이 되도록 한다. 원판의 두께는 3~5cm가 되도록 하며, 수간에 직각으로 벌채점 위를 벤다.

$10.5m - (0.2 + 1 + 2 + 2 + 2 + 2 + 1) = 0.3m$

5.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대경재의 단위재적당 단가는 소경재의 단위재적당 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생장의 종류는? 4

- ① 상대생장
- ② 절대생장
- ③ 등귀생장
- ④ 형질생장

-> 탑스팟 p.53

* 형질생장(形質生長)

지름이 커지고 재질이 좋아지는데서 오는 단위재적당 가격상승에 유래한다.

어느 기간에 임목의 형질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서 일반적으로 재적생장에 따라 임목의 등급이 상위 등급이 되며, 재종이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가의 차이이다.

6. 임업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 ① 임업의존도
- ② 임업조수익
- ③ 임목자산장비율
- ④ 임업소득률

-> 탑스팟 p. 228, 229

임목자산의 양적지표로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산림면적이나 임목자산장비율 등을 사용한다.

임업경영의 성과는 임가소득·임업소득 또는 임업순수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임목자산장비율은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목자산이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임업경영의 성과는 임가소득·임업소득 또는 임업순수익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임업의존도·임업조수익·임업소득률이 임업경영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업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목자산장비율입니다.

7. 정수계획모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 ① 선형목적함수
- ② 선형제약조건식
- ③ 모형변수들이 0 또는 양(+)의 정수
- ④ 분할성에 대한 전제조건

-> 탑스팟 p. 138

정수계획법은 선형계획모형의 특성 중 분할성 대신 정수제약조건을 갖는다.

정수계획모형의 특성은 선형목적함수, 선형제약조건식, 모형변수들이 0 또는 양(+)의 정수, 특정 변수에 대한 정수제약조건 등의 네 가지이다.

정수계획문제는 순수정수문제, 혼합정수문제, 0-1 정수문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8. 산림면적 1,000ha, 윤벌기 20년, 주벌수확량 100m³/ha, 간벌 15년에 간벌수확량 20m³/ha인 법정림의 장기보속수확량(long-term sustained yield)은? 2

- ① 5,000m³
- ② 6,000m³
- ③ 10,000m³
- ④ 12,000m³

->

장기보속수확량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수확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림면적 1000ha/윤벌기 20년=50ha(영계면적)

매년 작은네모칸에서 주벌 수확량 100m³/ha가 수확됩니다. 주벌수확을 하는 동안 다른 임분들 중 15년생인 곳에서는 간벌수확(20m³/ha)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20m³/ha만큼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0m³/ha × 50ha = 6000m³입니다.

9.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요존국유림의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 ① 국유림 내 공·사유림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시설물
- ② 수목원, 산림욕장의 지정 및 조성
- ③ 임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버섯류, 약초류의 재배
- ④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산림조합의 사업지

-> (법률 정리 프린트에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국유림 대부 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대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④ 산림탄소흡수량은 m3/ha 단위로 거래한다.

->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법률을 더 꼼꼼하게 정리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률 정리 프린트)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법률 정리 프린트)

11. GIS 공간분석기능에 있어서 근접분석을 할 때에 관심 대상지역을 경계짓는 것으로 공간형상의 둘레에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만큼의 구역을 도출하는 기능은? 4

① 질의기능

② 검색기능

③ 확산기능

④ 버퍼기능

-> 답스팟 p. 306

* 버퍼기능 : 버퍼기능은 관심대상지역을 경계짓는 것으로 공간형상의 둘레에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만큼의 구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버퍼는 점.선.면 등의 모든 객체요소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버퍼링한 결과는 모두 면의 형태로 표현된다.

12. 한 임분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추정한 지위지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부주의로 인한 측정오류

②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농도 변화

③ 초기생장 시 피압된 유령림

④ 임령과 수종이 다양한 이령혼효림

-> 답스팟 p. 115

어느 한 임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 추정한 지위지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네 가지 원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초기생장기간 동안의 피압은 유령일 때의 지위에 대하여 상당한 과소추정치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시간과 더불어 점차 사라진다.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위급이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록 느리지만 토양유기물 층 및 배수조건의 변화와 시비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 미세입지상의 임분은 지위곡선에 의한 유형을 따르지 않는다.

㉣ 관습적인 임령-수고곡선의 조제를 위한 표본이 제대로 균형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13. 산림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분구조 외에 고려한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

- ① 신품종 수종을 도입할 때는 비용효율성을 고려해서 단기간 대량으로 갱신한다.
- ② 경영대상 산림면적이 크면 간단(間斷)작업을 하고, 작으면 보속작업을 지향한다.
- ③ 지역의 유희노동력이 풍부하면 밀식조림과 집약경영을 지향한다.
- ④ 접근성이 좋으면 간벌을 하지 않는 조방적 조림이 바람직하다.

-> 탐스팟 p. 57

* 임업경영과 경영주체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 삼림면적이 작을 때에는 수확을 매년 하는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간단작업을 한다.
- 삼림면적이 비교적 크면 수확을 매년 하는 보속작업(保續作業)을 계획한다.
-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할 때에는 벌기령을 짧게 하고 속성수와 유실수 등을 같이 심도록 하고, 재정상태가 넉넉할 때에는 장기수를 심고 벌기령을 길게 한다.
- 경영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방적 경영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간단한 작업을 하도록 한다.
- 경영목적이 농용재 생산일 경우에는 여러 수종을 선택하고 벌기를 짧게 하며, 원료재(原料材)를 생산할 때에는 단일 수종을 밀식하여 개별작업을 한다.
- 대재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벌작업을 하고, 공익 증대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식하여 택벌한다.
- 자가노동력이 많을 경우에는 밀식조림을 하여 집약경영을 하고, 노동력이 적을 때에는 식재본수를 줄이고 조방적 경영을 도모한다.

탐스팟 p. 56

* 수종선택시 유의할 점

- 향토수종 중에서 주수종을 선택할 것
- 일시에 새로운 수종을 대량으로 변경하지 말 것
- 조림기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할 것
- 각 임지에 적합한 여러 수종을 골고루 선택할 것

접근성이 좋으면 작업하러 자주 들어가도 됩니다..

14. 단목생장모델(single-tree growth model)을 구성하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 ① 직경분포모델(dbh-distribution model)
- ② 고사모델(mortality model)
- ③ 갱신 또는 진계생장모델(regeneration or ingrowth model)
- ④ 수고생장모델(height growth model)

-> 탐스팟 p. 119, 120

* 직경분포모델

개체목의 흉고직경을 일정한 크기의 급수로 나누면 다양한 형태의 흉고직경분포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직경분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직경분포모델 또는 등급모델은 임분의 평균치를 이용하는 대신에 생장인자, 특히 흉고직경의

크기를 등급화시켜 각 등급별로 생장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단목생장모델은 보통 직경 및 수고생장모델, 고사모델, 갱신 또는 진계생장모델로 구성된다.

- ㉠ 흉고직경생장모델
- ㉡ 수고생장모델
- ㉢ 고사모델
- ㉣ 갱신 또는 진계생장모델

15. 표본조사법에서 표본점수 결정은 변이계수를 잘 추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유림에서의 변이계수 추정 범위로 옳은 것은? 1

- ① 침엽수 인공림 10년급 200~400%
- ② 침엽수 인공림 20년급 100~200%
- ③ 침엽수 인공림 30년급 50~100%
- ④ 침엽수 인공림 60년급 10~50%

->

침엽수 인공림 20년급 60~100%
침엽수 인공림 30년급 40~70%
침엽수 인공림 60년급 20~50%

16. 임목의 가격을 사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사항이 아닌 것은? 4

- ① 총재적의 재종별 재적
- ② 조재율 또는 이용률
- ③ 단위재적당 채취비
- ④ 재종별 산지가격

-> 탑스팟 p. 330

임목가격을 사정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할 사항은 ㉠ 총재적의 재종별 재적 또는 재종별 비율
㉡ 조재율 또는 이용률 ㉢ 단위재적당 채취비(벌채비+운반비+잡비 등) ㉣ 단위재적당 사업자
금의 이자 및 기업자의 기업이익(총액/총재적) ㉤ 재종별 시장가격이다.

17. 국유림경영계획의 소반경영계획 수립 시 수확조절을 위한 수종별 목표직경으로 잘못 짚혀진 것은? 3

- ① 소나무 - 60cm
- ② 잣나무 - 46cm
- ③ 낙엽송 - 46cm
- ④ 참나무류 - 40cm

-> 탑스팟 p. 173

구 분	직 경	구 분	직 경
소나무	60	리기다소나무	40
잣나무	46	편백	46
낙엽송	40	참나무류	40

18. 배롱나무로 조성된 공유지 관리에 매 5년마다 1,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면, 벌기 전까지 소요된 인건비 합계의 현재가를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벌기령은 산림경영계획상의 기준벌기령을 말하며, 이율은 4%이다.) 2

보기생략

-> 이 문제는 난도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상의 기준벌기령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식에 어떤 식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유림에서 기타활엽수의 기준벌기령은 40년입니다. 벌기 전까지 소요된 인건비는 5년주기로 7번입니다. 벌기까지였다면 8번이었겠지만요.

5년마다 벌기 전까지 소요된 인건비 합계의 현재가를 계산하라는 것은 유한정기수입의 전가합계식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탑스팟 p. 345 유한정기수입의 전가합계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0\text{만원} \times (1.04^{7 \times 5} - 1) / 1.04^{7 \times 5} (1.04^5 - 1)$

19. 공 . 사유림에 있어서의 벌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모두베기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모수작업의 1개 벌채구역은 1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솎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③ 솎아베기사업 시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은 특용·소경재로 분류한다.

④ 솎아베기사업 시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은 대경재로 분류한다.

-> 탑스팟 p. 181, 182

모두베기 벌채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모수작업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겨 두어야 한다.

20. 산림보호법.상의 산림병해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①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② 방제활동은 산림병해충의 발생지역에서 발생여부, 정도,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산림청장은 방제사업 착수 10일 전까지 일시, 지역, 방법,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지자체장은 긴급상황 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위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법률정리 프린트) 법률정리프린트만 잘 보셨어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너무 지엽적이네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착수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